

2. 정책 동향

□ 정책 이슈 : 「제조물 책임법」 시행 연기 방침

- (내용) 정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올해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던 제조물책임 (PL: Product Liability)법을 2~3년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
 - 실물경제 회복이 경제 전체의 회복과 직결되는 현시점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의 시행을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의견 수렴
- (찬반 양론)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과 시행 여건의 사전 조성 및 점진적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
 - 조기 시행 주장의 이유: ▷소비자 보호 제도의 강화 필요(제도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 심각) ▷기업들의 제품 안전 노력 제고 ▷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
 - 제도시행 유예 주장의 이유: ▷제조물책임보험 등의 제도적 장치 미비 ▷중소 기업 육성 장애, 신제품 개발 활동 위축, 제조원가 상승 초래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점검 ▷클레임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 장치 완비 ▷미국의 법안 완화 움직임과 중국·필리핀의 시행 유예
 - 소비자단체들은 신속한 법안 도입을 찬성하는 반면 유통·제조업체들은 현 시점에서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. 일부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을 농산물 등 1차산품이나 아파트·주택 등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
- (전망)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정기국회에 유예기간 2~3년 적시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
 - 정부측에서는 이 법률의 기본 목적이 소비자 보호를 한 차원을 높이는 것이므로 임시국회가 아닌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힘
 - 유예기간의 경우 2~3년으로 늘려 기업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능력을 확보하고 경제 전체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이후에 시행되도록 할 방침
 - 결국,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2001년이나 2002년이나 가능
 - 한편,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업계의 입장 반영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평가도 있음

□ 정부 정책 동향 (1. 25~2. 1)

<p>거래위원회(1.25): 개정 공정거래법 4월 1일 부터 시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주회사 설립 허용 : 자체 부채비율 100% 미만, 자회사 지분 50%(상장회사는 30%) 이상 보유. 금융업과 비금융업 자회사의 동시 소유 불가, 30대 그룹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허용 -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제 폐지, 사후 추정 도입: 시장점유율이 1개사 50%이거나 3개사 75% 이상인 사업자는 독점사업자로 규정 - 적용대상 모든 사업자로 확대, 금융기관·보험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
<p>금융감독위원회(1.25): 5대그룹 채무개선 약정 8개 점검 항목 확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개 항목 : 부채비율 감축, 계열사정리, 자산매각, 유상증자, 외자유치, 분사화계획, 채무보증 해소, 지배구조 개선(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)
<p>공정거래위원회(1.26):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7개 정부투자·출자·재출자기관과 75개 자회사에 대해 2월중 예비조사를 거쳐 혐의 업체를 선정, 조사
<p>정부(1.27): 입찰담합 등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방지대책 마련 방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월부터 공사예정금액의 90% 이상을 보장하는 공공공사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폐지 - 담합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한 수시 조사, 담합 기업에 대한 최고 2년의 정부발주공사 참여 제한 조치
<p>공정거래위원회(1.27): 개정 하도급법 4월 1일부터 시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금결제비율 유지 :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업자에게 대금 지급 - 어음만기일 유지 :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만기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-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, 서면지급시점 공사시작 이전으로 명시 등
<p>건설교통부(1.28):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: 입주자 모집공고후 사업계획 변경 가능, 신규아파트 미등기전매 허용,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 연기 기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-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운영 제도 보완 : 담당 업무 가운데 대출보증, 손해배상보증, 리스보증 제외 - 감리제도 개선 : 감리원은 공사기간만 현장 배치, 감리책임자는 공사기간 내재 현장 상주
<p>문화관광부(1.28): 관광비전 21 - 관광진흥5개 년 계획 확정 발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99~2003년 8조 3천억원 투자, 70만 일자리 창출, 2003년에 관광객 700만명, 관광수입 120억달러 목표 -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광장 조성, 금강산·설악산 일대 개발, 문화관광권별로 50개 중점사업을 발굴 육성
<p>산업자원부(1.28): 대기업 分社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혜택 방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분사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내부지원을 분사후 1년동안 허용 방침 - 분사업체를 중소기업으로 분류, 구조개선자금 지원, 병역특례 인력지원, 기술지원 등의 시책 제공 예정

(민 주 홍 jhmin@hri.co.kr ☎724-4014)